#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45

발의연월일: 2025. 1. 10.

발 의 자:민형배・이개호・김성환

정동영 • 문정복 • 박지원

김문수 · 복기왕 · 조계원

임오경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, 광역 시·도교육청은 가능하나,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없 습니다.

지난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으나,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. 지방의회 감사 인력 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
이에,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,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.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2조

및 제8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교육청을"을 "교육청 및 지방의회를"로 한다.

제8조제1항 전단 중 "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"을 "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·도의회의 장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"을 "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의회의 장은"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전단 중 "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"을 "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·도의회의 장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"를 "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·도의회의 장은"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후단 중 "특별시·광역시·도의"를 "특별시·광역시·도 ·지방의회의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"지방자치단체"란 특별시 · │ 3. ------광역시·도(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• 시 • 군 · 자치구 및 특별시 · 광역 시·도의 교육청을 말한다. --교육청 및 지방의회를-----4. ~ 7. (생 략) 4. ~ 7. (현행과 같음) 제8조(감사기구의 장의 임용) ① 제8조(감사기구의 장의 임용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--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 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 단체의 장 및 시·도의회의 장 형 직위로 임용한다.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 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 의4제2항ㆍ제4항 또는 「지방 공무원법 | 제29조의4제2항・ 제4항·제5항을 준용한다.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 치단체의 장 및 시 · 도의회의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

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관계 법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 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·운 영하고, 그 심사를 거쳐야 한 다.

제16조(감사담당자의 임용) ①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 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 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감사담당자를 임 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합 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,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3조(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) 제23조(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)

<u>장은</u>
제16조(감사담당자의 임용) ① <u>중</u>
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
<u>의 장 및 시·도의회의 장은</u>
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
치단체의 장 및 시·도의회의
장은
- 게99ㅈ/가시겨귀이 투표 미 코크)

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(감사 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 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 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 기구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와 제24조, 제25조, 제32조 및 제34조에서 같다)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 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 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 보는 특별시 · 광역시 · 도의 경 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, 시· 군 ·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·광역시·도와 행정안전부장 관을, 특별시·광역시·도 교육 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,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 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 정기관(이하 "주무기관"이라 한 다)의 장을 각각 거쳐야 한다. ② ~ ④ (생 략)

①
- E 버 기 - 의 네 시 위
특별시·광역시·도·지방의회 이
<u>특별시·광역시·도·지방의회</u> <u>의</u>